

**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
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** (제17조제6항 관련)

사 업 명	승인 등을 받은 날	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
1. 택지개발사업	실시계획승인일	준공검사일
2. 도시개발사업	실시계획인가일	준공검사일
3. 대지조성사업	사업계획승인일	사용검사일
4. 주택건설사업	사업계획승인일	사용검사일
5.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	사업시행인가일	준공인가일
6. 도시환경정비사업	사업시행인가일	준공인가일
7.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사업	건축허가일	사용승인일

비고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·인가 또는 허가 없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 등의 고시일로 하고,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은 준공완료의 공고일로 한다.